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청송 백일홍카페 작약 2020〉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 소송구조 사건 분석 ㉓

16 • 대법원 판례

24 • 가정폭력상담실

2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28 • 어떻게 할까요

31 • 좋은 책

만주 모던

32 • 결혼과 인생(209) 만화일기 94

이 가장의 고민 _ 장차현실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상담소 법률구조의 핵심, 소송구조 -

가사 사건에서 파산·면책, 위탁가정,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복지’가 구성원들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목표가 된 현대 사회에서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법률복지 즉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이에 상담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률구조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라는 데에 저를 비롯한 상담소의 구성원 모두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이지만 가사 사건은 물론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민사, 형사, 파산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의 결과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데 법률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송구조가 그 한 가지입니다. 일찍부터 소송구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 소송구조를 시작한 것은 1972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해에 4건의 소송구조가 진행되었고 이후 1988년까지 해마다 10건 정도가 진행되다 1989년 20건, 그 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43건이 되었으며 이후 급증하여 2007년에는 228건, 2019년에는 493건, 전국적으로는 607건으로 모두 1,100여건에 이르는 소송구조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의 소송구조는 주로 이혼, 상속, 친생부인 등 가사 사건 중심이지만 근

래 들어서는 파산·면책, 위탁가정의 미성년후견 선임 관련,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고비 고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순간들마다 상담소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8년 IMF 시기를 겪으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여 2004년에는 이들이 361만 명까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가족갈등과 가족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상담소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이들의 가정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한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06년 60건으로 시작한 소송구조가 2017년 154건, 2019년 143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정과 함께하는 상담소는 이혼 등 가정문제 전반을 상담하면서 위기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제도의 하나인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거의 없었던 2004년경부터 가정위탁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법률지원 및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현 아동권리보장원)와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16년 6건을 시작으로 2017년 8건, 2018년 22건, 2019년 24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가정상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양육비 관련 소송구조도 있습니다. 상담소의 양육비 사건은 대체적으로 화해결정문을 통해 해결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소송구조 사건 역시 2007년 89건이었던 것이 2017년 110건, 2018년 91건, 2019년 100건 진행되었으며, 양육비 관련 면접 상담건수는 2017년 670건, 2018년 763건, 2019년 861건으로 매

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우리 가정의 모습도 급변하고 있으며 상담소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정, 가족구성원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전체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상담소도 면접상담을 임시중지하고 전화 및 인터넷 상담에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 무작정 상담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거나 전화문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시기에도 상담소가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새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간절하게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담을 재개하면서 오늘도 상담소 현관에서 체온을 재고 방문일지를 작성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챙기는 번거로운 절차를 마다하지 않고 상담소나 가정법원 내 상담소 출장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상담소의 존재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서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물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정 내 갈등과 마찰, 불화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건강과 경제 논리 사이의 위태로운 외줄타기의 현상을 상담소는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현실과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결코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것 나아가 상담소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사회적 어려움 앞에서도 상담소는 늘 이 자리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 모든 가정,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특 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 소송구조 사건 분석 ③ | 양육비 관련 면접상담

양육비 관련 면접상담과 소송구조 해마다 증가 추세

모자가족의 소송구조가 69%로 가장 많아

양육비가 필요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생계유지와 자녀 돌봄의 역할을 혼자 수행하여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경제활동의 어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을 겪으면서 소득의 불안정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을 통하여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확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주목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2001년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실태 및 의식’ 조사와 심포지엄¹⁾을 시작으로 ‘이혼가정의 자녀 보호’,²⁾ ‘비혼모가족의 법적 권리와 복리’,³⁾ ‘이혼숙려기간 제도화’,⁴⁾ ‘양육비 이행확보 제언’⁵⁾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

과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것이 기초가 되어 민법,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⁶⁾ 이후에도 비혼모가족의 부양료 및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법안 마련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 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⁷⁾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사회변화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본소는 기존의 양육비 소송구조 사업에 더하여 2007년부터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여성가족부 지

-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2001년 5월 31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해당 조사와 심포지엄은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현실을 최초 조사·발표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2) 본소는 미국 뉴욕주 법원 마조리 필즈 판사를 초청하여 이혼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양육비·친권·양육권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3) 2003년 10월 9일 개최된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비혼모와 혼인 외 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에 관한 논의 및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 4) 본소는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 등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전국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04년 5월 10일 개최하였다.
- 5) 본소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라이너프랑크 교수를 초청하여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 부부재산제와 양육비 이행확보 제언”이라는 주제로 2005년 10월 28일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6) 조경애·정연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관련 법률구조사건 통계 분석 및 처리 결과”, 「가정상담」 통권325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년, 6면 참조.
- 7) 본소는 2018년 10월 25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국회의원 진선미의원과 공동으로 해당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원)으로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특화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 후에는 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소송구조를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2007년 89건이었던 것이 2017년 110건, 2018년 91건, 2019년 100건 진행되었으며, 본소의 양육비 관련 면접상담건수는 2017년 670건, 2018년 763건, 2019년 8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양육비 관련 문제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2019년에 진행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총 100건을 분석하였다.

I. 소송구조 대상

1. 가족 형태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한부모가족 즉 모자가족, 부자가족, 비혼모가족, 비혼부가족,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가족 형태에 따른 소송구조 건수를 살펴보면 모자가족의 소송구조가 69%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16%)과 비혼모가족(15%)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비혼부가족과 조손가족의 소송구조 신청은 없었다. 다만 부자가족 중 3건의 사건이 부의 건강, 복역 등의 문제로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소송구조 신청을 대리한 경우였다.

〈표 1〉 가족 형태별 소송구조 건수

구분	사건 수(건)
모자가족	69
부자가족	16
비혼모가족	15
비혼부가족	—
조손가족	—
합계	100

2. 연령 및 지역

1)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의 연령은 40대(49%)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30대(29%), 20대(11%), 50대(9%), 10대(2%)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경우도 40대(48%)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29%), 50대(11%), 20대(9%), 60대(1%) 순이었다.

〈표 2〉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비율)		구분	사건 수(비율)
	10대	2		10대	—
신	20대	11	상	20대	9
	30대	29		30대	29
청	40대	49	대	40대	48
	50대	9		50대	11
인	60대	—	방	60대	1
	미상	—		미상	2
	합계	100		합계	100

2) 자녀 연령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사건본인인 자녀는 사건 당 1명 내지 2명으로 모두 138명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8~13세가 51명(37%)으로 가장 많았고, 14~16세 연령대가 25명(18.1%)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아래의 표는 자녀의 연령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자녀 연령 분포

(단위 : 명, %)

구분	자녀 1	자녀 2	합계	비율
0-3세	15	1	16	11.6
4-7세	11	5	16	11.6
8-13세	36	15	51	37.0
14-16세	16	9	25	18.1
17-19세	16	6	22	15.9
19세 이상	6	2	8	5.8
전체	100	38	138	100

3) 지역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건, 경기 30건, 경상 16건, 전라 14건, 충청 8건으로 전국 단위의 소송구조가 이루어졌다.

〈표 4〉 지역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비율)
서울	32
경기	30
강원	—
충청	8
경상	16
전라	14
제주	—
합계	100

〈표 5〉 소송구조 사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사건 수(비율)
본안	종결	승소·조정	12
		기각	—
		각하	—
		이송	—
		취하	2
	진행 중		13
합계		27	
본안 외	종결	결정	50
		기각	2
		각하	1
		이송	1
		취하	8
	진행 중		11
합계		73	
전 체			100

II.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본안 소송과 본안 외 소송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본안 소송은 양육비 지급의무자와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을 말하고, 본안 외 소송은 양육비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은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집행사건이 해당된다.

2019년 본안 소송은 27건, 본안 외 소송은 73건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100건 중 76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본안 14건, 본안 외 62건) 24건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승소·조정·결정 62건, 취하 10건, 기각 2건, 각하와 이송이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나 95.3%의 승소율⁸⁾을 보여주고 있다.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본안 소송의 지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절차인 본안 외 소송을 차례로 지원함으로써 소송의 실효성과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높이고 있다.

1. 본안 소송 : 집행권원 마련

1) 본안 소송 추이

양육비 지급의무자와 액수 및 지급 기간 등을 결정하는 본안 소송은 2019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100건 중 27건을 차지했다. 본안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151건 중 104건(68.7%)이었던 것이 2017년 110건 중 59건(53.6%), 2018년 91건 중 21건(24.7%), 2019년 27건(27%) 등으로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08년 1월부터 협의이혼 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 제출이 의무화 된 것과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등의 효과로 보인다. 즉 이미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권원이 마련됨으로써 새로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수요는 줄어든 반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8) 승소율 : (승소·조정·결정)/(승소·조정·결정+기각+각하)

2) 가족 형태 및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2019년 진행된 27건의 사건은 인지 및 양육비 청구 11건, 양육비 청구(친권자 지정, 친권자 변경, 양육비 변경, 응소 등 포함) 1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가족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가족 형태별 본안 소송 건수

(단위 : 건)

구 분	모자 가족	부자 가족	비혼모 가족	비혼부 가족	조손 가족
인지 및 양육비 청구	-	-	11	-	-
양육비 청구	10	5	1	-	-
합계	10	5	12	-	-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건은 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아버지를 밝히고, 양육의 책임이 있는 아버지에게 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으로⁹⁾ 비혼모가족의 인지를 포함한 양육비 청구 사건이 본안 소송(27건) 중 40.7%(11건)를 차지하였다. 이는 본소가 2009년부터 애란원 등 비혼모 시설 등에 정기적인 강연 및 출장 상담을 실시한 결과이기도 하지만¹⁰⁾ 동시에 아직까지도 경제적, 법률적 지원이 취약한 비혼모가족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¹¹⁾

인지를 제외한 양육비 청구 사건을 청구 내용별로 살펴

보면 친권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청구(비양육자 청구 응소 1건 포함) 5건, 양육비 청구(변경 포함) 9건, 비양육자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한 응소 2건으로 총 16건이었다.

〈표 7〉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단위 : 건)

구 분	전체/당사자 관계	비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인지 및 양육비	11	11	-	-
친권자 지정(변경)	5	1	3	1
양육비	5	-	4	1
양육비 증액	4	-	2	2
양육비 감액 응소	2	-	2	-
합계	27	12	11	4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 간 관계를 살펴보면 비혼 관계 12건, 협의이혼 부부 11건, 재판상 이혼 부부 4건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에는 적은 사례 수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헤어지거나 협의이혼 시 단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양육비를 적절하게 합의하지 못한다거나,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구두 상으로만 약속하는 등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시기에 당사자 간 이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¹²⁾

9)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와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비혼 관계의 경우로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 관련한 양육사항에 대해 정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혼과 동시에 양육자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반면, 비혼 관계의 경우에는 생부의 자녀에 대한 인지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양육자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10) 본소는 2009년부터 애란원 등 비혼모 시설 등에 소송구조가 필요한 비혼모가족을 찾아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나, 이들이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다.

11)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비혼모는 21,254명으로 조사되었다(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10_4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최종검색 2020. 6. 15). 국내 비혼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의사와 행태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으나 대표성 있는 전국 단위의 자료는 부족하여 비혼모가족의 크기 변화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이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포용: 정책현황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정책학회, 2016년, 69면 참조).

12) 협의 이혼에 따른 이혼 전 상담은 권고조항에 불과하여 상담을 기피하는 당사자가 적지 않아 미성년자녀 양육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러한 제도과 운영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조경애,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권의 긴장관계 토론편”, 건강한 이혼과 자녀양육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인천가정법원·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인천일보, 2019년, 47면 참조).

양육비 청구와 함께 친권자 지정(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이혼 시 친권을 공동으로 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양육자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비혼의 경우는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양육자가 자녀를 계속 양육하여 왔으나,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구두 상으로만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아 친권자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양육자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확보 소송을 진행하자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한 비양육자의 청구에 대한 응소도 1건 존재하였다.

양육비 청구 사건 중 현재의 양육비보다 금액을 올려달라는 양육자의 청구는 4건이었고, 양육비를 감액하여 달라는 비양육자의 청구에 대한 응소는 2건이었다.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는 사건은 이혼 당시 월 5만원 혹은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현실과 맞지 않은 적은 액수의 양육비인 경우나 이혼 당시 2년 후 다시 양육비를 정하기로 조정조서에 작성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양육비 증액 청구의 공통적인 사유였다.

3) 양육비 청구 형태 및 인정 금액

27건의 사건 중 자녀의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것은 19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것은 8건이었다. 종결된 사건 14건 중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것이 11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것은 3건이었다. 14건 중 2건의 사건이 취하되었고, 12건은 승소, 조정의 결과를 냈다.

〈표 8〉 양육비 청구 형태

(단위 : 건)

	전체	종결	진행 중
장래양육비 청구	19	11	8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8	3	5
합계	27	14	13

종결된 14건 중 2건의 취하 사건, 3건의 응소 사건을 제외한 9건의 양육비 청구 금액과 판결(조정)의 인정 금액을 살펴보면 장래양육비의 경우 9건 대부분이 청구한 액수를 75%~100% 인정받았으나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의 30%~50% 정도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양육비 청구 및 인정 금액

(단위 : 만원)

사건본인 수	사건본인 연령	청구 금액		인정 금액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1	2		50		50
2	19, 18	15,000	60	5,000	40
1	14		60		60
1	13		100		70
2	16, 10		50		3,000
2	7, 5	5,800	50	2,880	30
1	1		50		40
1	8		80		60
1	1		70		70

● 〈 사례 1 〉

청구 금액 대비 대폭 감액되어 인정된 과거양육비

청구인(여, 52세)과 상대방(남, 49세)은 2006년 협의이혼하였고, 당시 상대방의 요구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한 바 없었고, 상대방은 이혼 후 8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혼 후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1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 상황,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면서도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에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것을 이유로 청구된 과거양육비 중 5,000만 원만을 인정하였다.

4) 소송기간

본안 사건의 소송기간은 1~3개월 2건, 3~6개월 8건, 6개월~1년은 2건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본안 외 소송 : 이행확보

1) 본안 외 소송 추이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마련되어 있으나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본안 외 소송은 2019년 양육비 관련 소송구조 사건 100건 중 73건이었다. 본안 외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151건 중 47건(31.3%)이었던 것이 2017년 110건 중 51건(46.3%), 2018년 91건 중 70건(75.3%)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체 소송구조 사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진행된 73건의 사건을 가족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모자가족의 신청이 58건(7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자가족 11건(15%), 비혼모가족 4건(5.5%)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족 형태별 본안 외 소송 건수

(단위 : 건)

구분	모자가족	부자가족	비혼모가족	비혼부가족	조손가족
전체	58	11	4	—	—

이행확보에 관한 소송구조 신청이 증가한 것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거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본안 외 소송 73건 중에 이혼 혹은 양육비 결정 이후 비양육자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는 35건이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양육비 지급이 자녀 복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비양육자의 인식 결여와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자라 할지라도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수차례 거쳐야만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2) 미지급 양육비 액수

소송구조 신청 당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의 액수를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구간에서 31건(42.5%)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구간 14건(19.2%),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구간 11건(1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9건(12.3%), 5,000만 원 이상 6건(8.3%), 300만 원 미만 2건(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양육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51건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미지급 양육비 액수

(단위 : 건, %)

구 분	사건 수	비율
300만 원 미만	2	2.7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9	12.3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1	15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31	42.5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4	19.2
5000만 원 이상	6	8.3
합계	73	100

3) 이행확보 유형별 사건 내용

본안 외 소송 중 집행사건은 크게 간접강제절차와 직접강제절차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¹³⁾ 간접강제절차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이행명령 및 그에 따른 제재 조치인 과태료, 감치 신청이 있다. 직접강제절차는 비양육자의 재산,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직접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이 있다.

(1) 간접강제절차

- 사건 현황

대표적인 간접강제절차로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이행명령이 있다. 이행명령 결

13)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된 소송구조 사건 중 주로 진행되는 절차를 집행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강제절차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없거나 확실하지 않을 때 주로 신청하게 되는 사건으로 2015년 28건, 2016년 33건, 2017년 37건, 2018년 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양육자와 양육자,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19년 양육비 관련 소송구조 사건에서 간접강제절차는 39건이 진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에 신청된 이행명령은 27건, 감치 12건이었고 과태료 신청은 없었다. 이중 이행명령 19건, 감치 10건이 종결되었다.

〈표 12〉 간접강제절차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이행명령	27	19	8
과태료	—	—	—
감치	12	10	2
합계	39	29	10

－ 결과 및 소송기간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행명령 신청은 19건 중 16건이 결정을 받았고 취하 2건, 이송 1건으로 나타났다.

감치 신청은 10건 중 5건이 감치 결정을 받았고 취하 3건, 기각 2건이었다. 이행명령과 감치를 취하한 5건의 사건은 모두 비양육자가 소송 진행 중 미지급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 후 이행을 약속한 경우였다.

2019년 취하된 전체 사건 10건 중 절반인 5건이 이행명령과 감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집행권원이 마련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비양육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강제절차의 의도가¹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감치의 경

우 2건의 기각 사건이 존재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였거나 이행명령 결정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건이었다.

소송기간을 살펴보면 이행명령 사건의 경우 1~3개월 7건, 3~6개월 8건, 6개월~1년은 4건으로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감치 사건 또한 1~3개월 1건, 3~6개월 10건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2건의 감치 사건은 현재 종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송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모두 상대방에게 송달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감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건이다. 간접강제절차가 종결된 이후 양육비가 일부 혹은 전부 지급된 건수는 10건(34.5%), 공시송달로 종결되거나 미지급되어 추가적인 법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19건(65.5%)으로 나타났다.

● 〈 사례 2 〉 양육비 판결을 지연시키는 송달 문제

신청인(여, 47세)은 피신청인(남, 48세)과 2007년 협의이혼 하였고, 이후 양육비 청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2008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 신청인은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피신청인이 소재불명 상태이고,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기각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9년 이행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현재까지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현재 등본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다르게 하고 선불폰 등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직접강제절차

－ 사건 현황

본안 외 소송의 또 다른 형태로 직접강제절차를 들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이행명령, 감치 등의 간접강제절차와는 다른 실질적인 집행절차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대표적으로 직접지급명령,

14) 이무상, 「간접강제-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3권 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년, 761면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며, 이외에도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강제절차는 비양육자가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진행될 수 있다.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13건, 2018년 17건, 2019년 24건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접 강제절차 신청 사건보다 적은 수준이다.

직접강제절차 24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에 신청된 직접지급명령은 7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5건, 부동산강제경매가 2건 지원되었으며, 모두 종결되었다.

〈표 13〉 직접강제절차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직접지급명령	7	7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5	15	-
부동산강제경매	2	2	-
합 계	24	24	-

- 결과 및 소송기간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24건 중 22건은 모두 결정을 받았고 2건의 취하 사건이 존재하였다. 취하된 2건의 사건은 모두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였다.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결정이 이루어진 7건 중 4건이 비양육자의 급여를 통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2건은 비양육자의 퇴사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1건은 결정은 받았으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양육비가 지급되지 못하였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경우, 압류 대상을 살펴보면 급여 10건, 예금 2건, 카드매출 2건, 보험환급금 1건으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예상이 가능한 급여채권의 압류 건수가 높았다.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은 사건 10건 중 5건이 추심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었고, 3건은 비양육자의 퇴사, 2건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추심은 이

루어지지 못했다. 예금과 보험환급금의 경우, 3건 모두 금액이 부족하여 추심에 이르지 못했고,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2건 모두 추심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직접강제 사건은 비양육자의 급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 절차 진행 및 양육비 지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불가한데, 압류금지채권의 경우 임금과 물가 상승에 따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최저금액이 상향되는 추세이다.¹⁵⁾

소송기간은 1~3개월 27건, 3~6개월 5건, 6개월~1년은 1건으로 보통 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직접강제절차가 종결된 이후 양육비가 일부 혹은 전부 지급된 건수는 13건(54.2%),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법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11건(45.8%)으로 나타났다.

● 〈 사례 3 〉 직접지급명령 결정 후 채무자의 퇴사

채권자(남, 48세)와 채무자(여, 33세)는 채무자의 가출로 2016년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에도 채무자는 소재불명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2016년 5월부터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출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되었고, 중풍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조업 관련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정이 이루어지자 이를 알게 된 채무자는 퇴사하였고,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회신 받게 되어 결국 양육비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 〈 사례 4 〉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자(여, 30세)와 채무자(남, 40세)는 2012년 협의이혼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후 채무자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혼 전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의로 빌린 금원도 갚지 않아 채권자는

15)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에 따르면 2005년 120만원, 2011년 150만원, 2019년 185만원으로 개정되어왔다.

이를 갚으며, 어렵게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주소지 근처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압류 결정 이후 제3채무자의 회신이 지체되어 확인하여 보니 급여 수준이 150만 원 이하인 곳으로 양육비 지급을 위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3) 그 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 사건 현황

간접강제나 직접강제절차로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재산명시/재산조회,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절차도 소송구조 사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9년에는 재산명시와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 각각 4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2건 진행되었으며 현재 1건의 담보제공명령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종결되었다.

〈표 14〉 그 외 이행확보 절차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재산명시	4	4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4	3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	2	-
합계	10	9	1

- 결과 및 소송기간

종결된 사건을 살펴보면 9건 중 7건이 결정되었으며, 각 하와 취하가 1건씩 존재하였다. 각하는 재산명시 사건에서 송달불능인 경우였으며, 담보제공명령 사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취하를 권유해 취하로 종결되었다.

4건의 재산명시 사건 중 각하된 1건을 제외한 3건 중 1건은 재산 없음으로 나타났다. 다른 1건은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비양육자는 재산명시 이후 해당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한편 비양육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의 경우, 이미 세금 및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 추가적인 집행사건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의 경우 실효성의 문제로 취하된 1건과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이 각각 1건씩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담보제

공명령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양육자는 이행명령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건은 2018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비양육자는 해당 명령 또한 이행하지 않아 현재 감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기간은 1~3개월 5건, 3~6개월 3건, 6개월~1년은 1건으로 보통 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사례 5〉 재산목록 제출 후 자동차를 처분한 채무자

채권자(남, 29세)와 채무자(여, 27세)는 2011년 협의이혼하였다. 채무자는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채무자는 간헐적으로 총 7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미지급된 양육비는 2,000만 원이 넘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일 이후 급하게 자동차를 처분하여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III. 결

소송구조 신청자인 양육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양육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소득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고, 이와 함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자는 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집행을 신청하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본소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송이 끝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양육자에게 큰 좌절감을 주고 있다.

소송구조 진행 중 드러난 사실들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를 정하는 시기에 양육비 산정에 관한 정보

가 부족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으나 양육비는 통상 당사자 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비양육자가 소득을 숨기는 등으로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청구하더라도 그 금액이 대폭 감액되어 결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과거양육비는 흔히 비양육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양육비 청구는 장래양육비 청구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권리이며, 특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양육자의 경우 그만큼의 경제적 고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 감액되어 인정되는 금액은 양육자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비양육자 중에는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 혹은 전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정도로 인식하여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양육비 산정 시 현실을 반영하고 지급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필요하며 동시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전 상담의 의무화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송은 적어도 최소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육자가 양육비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양육비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소송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양육비 관련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신속한 진행이 요구된다.

셋째,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185만 원의 비슷한 근로소득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자가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비양육자의 소득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압류가 불가능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언급한 사례와 같이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양육비 채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양육비 채권

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범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양육비 관련 소송 절차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법제도 중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자가 급여 소득자가 아니어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개 신청하는 절차로 비양육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담보제공명령을 비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조치로 일시금지급명령을 거쳐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소의 소송구조 사건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에 대한 감치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실효성의 문제로 법원에서 취하를 권하기도 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비양육자가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해당 절차가 과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양육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더디게나마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출국금지, 아동학대로의 처벌 등이 여전히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양육비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또한 비양육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현재의 방법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양육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양육비가 필요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혜경 상담위원



대법원 판례*

아동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 호주제 폐지 이후 사회상의 변화 반영해

대법원 2020스57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부(父)가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제2항(이른바 '사랑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2013. 6. 5.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중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
- 사건본인(2018. 9. 8. 출생)은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출생함.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모는 바로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사건본인의 모가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되었고, 그 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이 거부되었음

- 신청인은 2015. 5. 18. 신설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¹⁾에 의한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함

▣ 관련 법령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가족법개정을 주도해 온 상담소에서는 일찍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현실적인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민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한다.

1) 부가 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이른바 '사랑이 법'을 의미함

▣ 소송 경과

- 원심(=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음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은 ‘모의 성명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은 사건본인의 모가 외국인이지만 출생증명서에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이하 ‘이 사건 예규’) 제8조에 의하면, 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는 이 사건 예규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수리가 거부된 것임
 -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
 -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음
 - 즉, 사건본인의 모는 중국 당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하여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도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 대법원의 판단

▣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함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국적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임(헌법 제10조)
-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음(헌법 제37조 제2항)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이 사건 조항’, 이른바 ‘사랑이법’)의 도입 배경 및 취지

- 이 사건 조항의 도입 배경
 - 모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모가 자녀의 출산 후 잠적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 단독으로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성분 창설, 인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음
 - 그 결과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못하고 버려지는 사태마저 발생하기에 이르렀음
 - 즉,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 또

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등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며, 취학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됨

- 출생기록이 없어, 불법입양,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음
- 이러한 아이들은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조항의 취지

- 이 사건 조항은 2015. 5. 18.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간소하게 함으로써 출생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됨
- 이로써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

●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 ① 문언 그대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이 사건과 같이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 대법원의 결론 : 파기환송

- 사건본인과 신청인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친딸임을 인정할 수 있음
- 사건본인의 모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예규 제8조에서 정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위 ③의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됨
-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부당함

3. 판결의 의의

▣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임

- ▣ 하급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건 대법원 결정에 의하여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음



대법원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6. 18. 구 인사소송법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데,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당연 제소권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2명(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과 3명(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1. 사안과 쟁점

가. 사안의 내용

■ 최○○(이하 'A'라 함)은 1909. 8. 10. 사망했고, 2010. 8. 15. 건국훈장 4등급 애국장 포상대상자로 결정됨

■ A의 자녀로는 장남 B, 장녀 C, 차녀 D가 있었는데, 장남인 A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 장녀인 C와 그 배우자, 차녀인 D와 그 배우자는 위 포상대상자 결정일 이전에 모두 사망하였음

■ A의 장녀 C의 자녀인 E(1933. 8. 21.생, 여, A의 손자녀)는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이라 함)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

였으나, 2011. 11. 30. 광주지방법보훈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위 유족등록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2014. 10. 16. 최종 확정되었음

■ A의 장남 B의 손자인 원고(A의 증손자)는 위와 같은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된 E의 어머니인 C가 A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이유로 A와 C사이, F(A의 처)와 C사이에 친생자관계가 각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고²⁾ 달리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 구 독립유공자예우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을 받는 유족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및 며느리 순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게 되어 있음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A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함

나.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독립유공자인 A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쟁점 판단을 위해 먼저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를 살펴보고,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2. 관련 법률 규정

가. 구 인사소송법(1961. 12. 6. 법률 제803호로 제정되어 1962. 1. 1.부터 시행되었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됨)

- 제26조(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5조(준용규정)

-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본 절(친생자와의 관계)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준용한다.

나. 민법

-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1항

- 제845조³⁾, 제846조⁴⁾, 제848조⁵⁾, 제850조⁶⁾, 제851조⁷⁾, 제862조⁸⁾, 제863조⁹⁾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

- 3)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4)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6)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7)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8)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77조(친족의 범위)

- 법률상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3.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11명)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기각

- ▣ 민법 제86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 및 체계, 위 조항에 인용된 다른 규정이 정한 소송절차의 특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 조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권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음(민법 제845조, 제846

조, 제862조, 제863조 참조)

-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민법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님
-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865조 제1항 및 제862조에 따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함.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무런 친족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스스로 생부나 생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주장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신분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함

- 1962. 1. 1.부터 시행되다가 1990. 12. 31. 폐지된 구 인사소송법은 인(人事)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정하면서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언제든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제35조, 제26조)을 두고 있었지만, 1991. 1. 1.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권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핵심적 근거조항이 사라짐

9)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호주제를 전제로 한 가족제도를 유지해왔고, 호적부에는 호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家)의 일원으로 기재되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로 재편되고 호적부를 대신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기록되고 있음.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도 이미 핵가족화되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법률적, 사회적 근거가 약해짐
-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로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룰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 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제소요건이 엄격한 다른 소송절차를 대신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여기에 더하여 원고적격 범위까지 넓히는 것은 다른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고 법령의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3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권리나 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음

나. 별개의견(2명)

종전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관한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의 제기권자 범위 및 이 사건 원고가 제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함.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상고를 기각해야 함 → 상고기각

■ 구 인사소송법 등이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법령의 변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의 제기권자는 오로지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해서만 규율되게 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이 타당함

■ 종전 대법원 판례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이 제시한 논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는 진실한 혈연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재판절차로서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다수의견과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의 제기권자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들이 다른 소송절차에서 선결문제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므로,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가정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실효성이 없음. 오히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허용하여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성과 진실성도 확보할 수 있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의 원고적격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인데, 판단기준을 복잡하게 정할수록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다툼이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다수의견이 민법 제851조의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하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소제기를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28조), 보충적 친생부인의 소제기권자에 관한 민법 제851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와 어울리지 않음
- 자녀의 직계비속이 다른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부모(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도 다른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언해석임

■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되어야 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함

- 다수의견이 제시한 기준은 신분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면서 재산적 이해관계만을 갖는 경우(보험금 수익자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까지 확장될 우려가 있어 타당하지 않음
-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보면 가정법원의 심리와 판단의 초점이 ‘혈연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권리의 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옮겨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자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각종 행정법령에 규정된 보상기준이나 유족의 범위 등을 심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 A의 증손자로서 직계비속인 원고는 민법 제865조 제1항 및 제851조에 따른 당연 제소권자인 ‘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 및 제862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함. 다만, 원심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A, F와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도 하였으므로,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상고를 기각해야 함

3. 판결의 의의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후 약 40년간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라는 신분관계만 있어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해왔음

■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핵심적 근거가 되었던 구 인사소송법이 1990. 12. 31. 폐지되었고, 2005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는 등 가족제도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

■ 나아가 다양화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나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였던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급심 실무의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가정폭력상담실

행위자 상담



상대의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행위,
고성과 욕설 모두 폭력

사건번호 2018버1*** 폭행 /
2018버 1***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3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2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1. 26. ~ 2019. 8. 7. (아내)
2018. 11. 28. ~ 2019. 4. 26. (남편)

상담경과

부부는 2016년에 이혼하였지만, 아이(7세)를 생각하여 재결합하고 사실혼으로 지냈다. 재결합 후에도 다툼이 잦았고, 아내는 여러 번 집을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였다. 2018년 5월 사건당일, 생활비와 자녀양육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는 남편이 조립하여 진열장에 올려놓은 고가의 레고를 집어던져 손괴하였고, 남편은 손으로 아내의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쌍방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아내는 갈등요인으로 남편이 생활비를 잘 주지 않고, 의심하며, 양육 태도가 다른 점 등을 꼽았고, 남편의 폭력이 습관화되는 징후를 보여 이를 교정하고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다. 사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어 부부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초순경 헤어지기로 합의하였다. 아이는 남편과 시모가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초상담시 확인 결과, 아내는 친정의 도움으로 집을 구하여 혼자 살고 있었으며 취업 준비 중이었다. 상대방과는 아이 문제에 대해서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재결합의사가 없다며 상담을 함께 받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였다. 상대방의 레고를 부순 것이 가정폭력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동영상 시청교육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다.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서 아이를 만나지 않고 있지만, 장차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시부모가 가끔 전화로 아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다.

남편은 갈등요인으로 아내의 가사 불성실과 육아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고,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사실혼해소가 아니라 예전부터 반복되어온 아내의 가출이라고 하면서도 아내의 사실혼해소 의지가 강하므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부부는 별도로 상담에 참여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가정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래된 불화, 그리고 그 때마다 발생한 가정폭력의 경험이 부부관계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으며 헤어짐이라는 결과를 수용하게 되었다.

사건번호 2018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6회, 음주문제상담 2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등 총 26회 실시

상담기간

2019. 2. 12. ~ 2019. 8. 1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10여년 교제 끝에 결혼한 지 20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19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8년 10월 사건당일, 만취한 상태로 학원에서 귀가하는 딸을 데리러 가려는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자명종시계를 던지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초상담에서 행위자는 평소 피해자와 갈등이 없고 화해하였다고 하였다. 다만, 아이가 고3이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본 사건도 그 와중에 벌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주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보호처분 결정까지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법적 결정에 의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이를 통하여 음주문제 습관 및 음주 후 행동 등이 개선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회사 일로 1주일에 2회 정도 음주하고 음주량은 소주 2병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되지는 않

는다고 하면서도 음주 후 말이 많아지는 점은 인정하였다. 음주 다음 날에는 피해자가 꼭 행위자의 행동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행위자는 그 때마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고 한다. 행위자는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법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강하였다. 주로 목요일에 음주를 하였는데 본소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목요일에 계획되어 있어 자연히 음주 기회가 줄 것 같다는 전망도 하였다.

상담 중기에 피해자에게 행위자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행위자의 음주횟수는 여전하지만 음주량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행위자가 상담기간 중 자신에게 “내가 교육을 받으라”고 한 예를 들며 상담을 받는 것이 행위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상담횟수 축소가능성 등을 의논하였는데, 정해진 일정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 행위자의 인식 및 폭력성행 개선에 효과적이라 설명하고 피해자의 이해를 도왔다.

행위자는 정해진 일정대로 상담에 임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상담기간 동안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을 잘 하며,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주일에 1회 음주하고 있는데, 상담종결 후에도 현재의 음주수준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집단상담에서 부부관계가 심각한 위기상태에 있는 구성원들을 많이 접했는데, 본인의 경우는 그렇게 심각한 위기상태가 아니며, 자신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실제 갈등도 심하지 않았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사건 발생 시에도, 현재도 부부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점 정도라고 평가하고 2점이 모자라는 요인은 맞벌이를 이유로 대화시간이 없었던 점을 꼽았다. 한해의 남은 시간은 아이의 수능시험에 집중하고 노력할 것이며, 향후 지금의 노력을 계속하면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많이 좋아졌고 음주 횟수와 음주량을 줄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아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부부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2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제2차 가족법개정(1963~1977) ①

1962년 7월에는 여성문제연구회 등 7개 단체가 주동이 되어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제출한 바도 있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상담소에 접수되는 불행한 사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불합리한 가족법 때문임을 날마다 목격하고 실감하는 상담소로서는 이를 더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족법의 완전한 개정만이 그 대책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법 개정이야 말로 남존여비사상의 제물이 되어 온 여성들에게 인간회복의 길을 터주고 여성의 불행, 가정의 비극을 덜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상담소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외쳤다.

1972년 유신헌법이 등장하고 1973년 초 유신헌법에 따른 첫 국회가 구성되자 10명의 여성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이 무렵은 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째 되는 해였다.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가족계획 사업은 점차 벽에 부딪히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등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제반 여건 때문에 가족법 개정의 기운이



각계에서 일기 시작했고 1973년 4월 27일 상담소와 대한YWCA연합회는 가족법 개정 강연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을 위한 범여성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강연회에 대한 호응은 예상을 넘어 대단했다. 그리하여 1973년 5월 21일 27개 여성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가족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열렸고 마침내 6월 28일 전국 61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 결성대회가 열렸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들, 사회저명인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명여고 강당인 삼일당에서 열린 이날 결성대회는 이태영 소장의 '가족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축진회 회장에 이숙중, 부회장에 김봉희, 김정례, 손인실, 오춘희, 이태영, 현기순 등 6명을 선출하고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당시 범여성가족법개정축진회에서 마련한 가족법 개정 10대 요강은 다음과 같다.

- 호주제 폐지
- 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동성동본 불혼제도 폐지
- 소유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
- 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 부모의 친권 공동행사
-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 상속제도의 합리화
- 유류분 제도

편집부



어떻게 할까요?



● 약혼은 18세 이상 가능하며 강요할 수 없다

Q 저는 22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 친구의 아들과 약혼시키고 가을에 결혼하게 한다고 서두르십니다. 사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현재 18세입니다. 아버지가 정해 준 사람이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할 수 없나요?

A 약혼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하고 타인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행 가족법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그러므로 약혼할 의사가 없으면 부모의 강요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지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1조). 따라서 귀하는 약혼에 부모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남자친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상 약혼이 성립합니다.

●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Q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시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약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약혼을 할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지요?

A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1조, 제808조 제1항).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고,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동법 제931조, 제932조 제1항),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합니다(동법 제930조 제1항).

●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약혼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다

Q 저에게는 28세의 지적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항상 남에게 속아 재산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후견인으로는 우리 부부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이 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약혼을 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들이 좋아서라기보다 저희 집 재산을 탐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그 여자와의 약혼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 동거하는 것을 법률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
 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2조).

● 약혼했다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 없다

㉡ 직장동료와 교제해 오던 중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약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결혼하자고 하던 약혼자가 1년이 지난 지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꼭 약혼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강제할 수 없나요?

㉢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약혼한
 사이라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
 조). 다만 약혼자가 귀하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을 선언
 한 경우 귀하는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동법 제806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 저는 55세로 노숙인 시설에서 자활근로 중에 있습니다. 5년
 전 생활정보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던 회사에서 취업 시 급여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인감 등을 이용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결국 제겐 은행대출 2천만 원만 빚
 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부
 터 노숙인 심터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월 평균 70만
 원에 불과해 빚을 갚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지만 임차보증
 金を 모아 시설에서 독립할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빚 때문에
 업무를 내지 못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저에게 파산신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파산이란 어떤 것이지요?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
 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
 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
 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입니다.

파산은 파산과 면책이라는 두 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에 파산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5조 제1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그러나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의 종결만으로는 채무자가 빚
 을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탕
 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
 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
 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동예규 제3조 제2항).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책신청에 관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동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동법 제557조 제2항).

법원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동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수죄(제655조)·파산증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활근로를 통해 월 평균 70만원의 소득이 있지만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자활근로 특성상 계약직이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발생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귀하께서는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으므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조현정동장애(조현병)를 앓기 시작하면서 10여년 이상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해 이를 충당하였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해봤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 결국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면 앞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며,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모든 증명서에도 저의 파산사실이 기재된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각종 법률상의 제한이 따릅니다. 사법상으로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는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법무사, 교원, 세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이후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 복권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신원증명사항에 있어서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파산선고 확정 사실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셋째, 파산을 선고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그 정보를 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장 개설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규선 상담위원

좋은 책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 '박정희'일 것이다. 현대사를 왜곡한 독재의 원흉과 반인반신이라는 평가 사이에 중간지점은 거의 없어 보인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와 그의 처, 가족에 대한 숭배를 보면 술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북쪽 김일성에 대한 전설이 생각나고 '역시 우리는 한 민족인가' 싶으면서 서로 혐오하면서 가장 닮아가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내가 박정희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주장한 '하면 된다'는 표어가 정말 혐오스럽고, 우리가 현대사에서 이룩한 놀라운 성취를 시민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택시를 타면 간혹 '그 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셨는데, 요즘 것들은 은혜를 모른다'는 기사들과 짧은 말싸움을 하곤 했다. '아닌데요, 전 저희 부모님이 먹여 살리셨는데요, 기사님도 기사님 부모님들이 노력해서 사신 거고 지금 애쓰셔서 자제분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고 계신 거구요.' 그래봤자 당연하게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 책 『만주 모던』은 이러한 박정희 시대와 한국 사회에 대해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 만주를 매개로 읽어내도록 하는 방향키이다. 1960년대는 급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간대로 오늘날 한국인을 상징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작동하면서 압축성장이 이루어졌다. 저자는 이 1960년대 한국의 '재건 체제' 혹은 불도저식 증산, 안보 체제의 원류를 만주국 체제(1932~45)에서 찾는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직결되어 있는 시공간이 1960년대라면 - 이 시대에 대한 향수가 이명박·박근혜 체제를 불러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최근 백선엽의 사후 장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을 보면서

관동군, 만주군의 역사가 현대와 얼마나 가까운지 놀라고 있다 - 또 이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공간이 바로 1930~40년대 만주라는 것이다. 작업의 기강과 동원 등 권위주의 체제의 요소와 불도저식 건설을 한국에 전파한 것은 일본 식민주의다. 만주국은 남만주에 철도를 건설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했던 관동군이 1931년 상부의 명령 없이 군벌 장쉐량 체제에 전쟁을 도발하고 이듬해 세운 나라다. 만주국 체제는 건설 분야뿐 아니라 생산, 안보, 위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적 정책 수행의 총체였다. 핵심은 소수의 지도자가 단기간에 결정해 밀어붙이는 속도다.

조선 농민들의 엑소더스, 경계의 확장, 광활한 대륙을 달리는 만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오족협화, 고난과 개척, 폭력과 근대, 이류들의 약진, 국제적 계보의 영화·음악 등이 만주를 설명하는 장면들이다. 1930~40년대 만주는 이러한 것들의 일종의 콜라주로 그리고 1960년대 한국은 그 시대와의 중첩적 국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주를 그저 소설 '토지'나 영화 '마지막 황제'로 기억하고, 만주국을 그저 그런 괴뢰국 정도로 생각했던 인식의 수준을 크게 깨뜨리는 흥미로운 방향이었고, 저자의 오랜 천착이 돋보였다.

저자 한석정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공저) 등이, 옮긴 책으로 『화려한 군주』 『주권과 순수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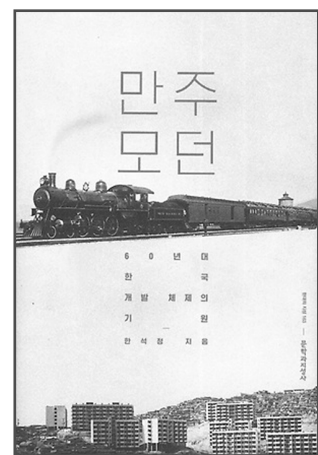
이숙현 편집부장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한석정 지음

문학과지성사, 2020



결혼과 인생 (209)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94



글 | 그림 | 장차현실

이가장씨의 고민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대화법 교육’ 동영상 및 ‘비혼모 가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과 제도’ 관련 만화자료와 교육영상 제작을 위한 회의 가져

본소는 지난 6월 19일 ‘대화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본소 객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차연실 상담위원, 박상진 상담위원이 참석하였고, 동영상 제작업체로 선정된 두물머리픽처스 서동일 감독이 참석하여 대화법 교육 동영상의 제작 방향 및 내용, 제작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처벌이 점차 확대되어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등의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는 상담현장에서 대화를 잘하고 싶다는 욕구가 높으며, 갈등상황에서 비폭력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훈련한 것이 부부 또는 가족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에 대화법 교육 동영상 제작을 통하여 갈등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을 예방하며,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재발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어 6월 26일에는 ‘비혼모 가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과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자료와 교육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객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차연실 상담위원, 서동일 감독, 장차현실 작가가 참여하였다.

비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다. 본소는 이러한 비혼모에게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제적·사회적·정신적인 어려움에 주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일교육과 2박3일 캠프 등에 이르기까지 비혼모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자녀동반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 이어서 그동안 캠프 및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졌던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주거마련, 건강보험관련 등에 관한 교육을 비대면의 정보제공 및 교육 책자와 동영상 자료로 개발하여 전국의 비혼모 관련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본소는 비혼모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비혼모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제공하여 비혼모 가정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관련사진 2면)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순회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다른 부문도 점차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6월 3일 순회상담(전화상담)
: 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6월 17일 순회상담(전화상담)
: 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손명진, 박슬기 변호사

2020년 6월 상담통계

총상담 5,245				
법률상담 (4,861)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1,138	3,594	126	2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195		78	111	

* 인터넷 정보 이용 49,467

2020년 6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245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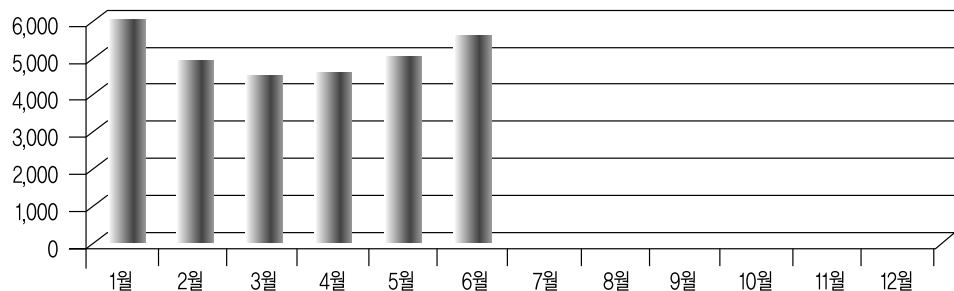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861건(92.7%), 화해조정 195건(3.7%), 소장 등 서류작성 78건(1.5%), 소송구조 111건(2.1%)이었다.

법률상담 4,86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5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21.6%→23.6%), 위자료·재산분할(11.3%→12.7%), 친권·양육권(5.0%→6.8%), 유언·상속(7.0%→7.5%), 가사절차(5.7%→6.5%), 개명(0.4%→0.6%), 미성년후

견(0.5%→0.6%), 가사기타(4.9%→5.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절차(0.1%→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86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38건(23.4%), 전화상담 3,594건(73.9%), 인터넷상담 126건(2.6%), 순회상담 2건(0.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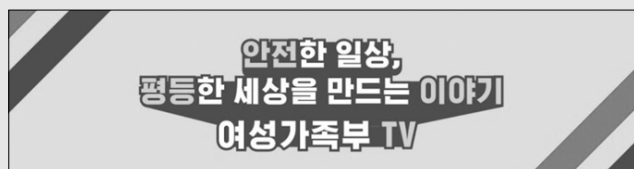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위원회에서 ‘가정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선임문제’에 관해 발표하였다. 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조정사건에 참여하였다. 17일에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젠더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관련법 대응방안’ 포럼에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 여성노년이혼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9일에는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T/F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18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과거양육비 청구사건을 조정하였다. 6월 5일에는 중앙일보와 울산지법이 5월 29일 신고한 딸 성폭행 친부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가정폭력과 친족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에 대하여, 헤럴드경제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고, 18일에는 여성신문과 민법 및 공직자윤리법상 성차별 조항에 대하여 20일에는 중앙선데이와 유언·상속 및 부양 관련 상담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곽배희 소장,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 출연

곽배희 소장은 지난 6월 25일 본소에서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의 기획영상 ‘가족, 새로고침’의 콘텐츠 촬영을 했다. 이 영상의 주제는 평등한 가족 문화를 위한 자녀의 성과 본 결정과 관련한 것으로 상담소는 이미 2013년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그리고 2018년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를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부부평등, 가족구성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온 바 있다.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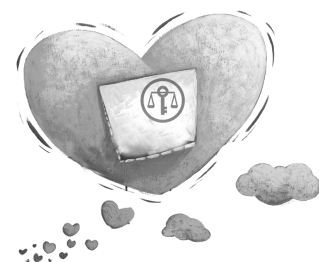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위탁아동의 성과 본 변경 허가

법률구조 2019-355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성과 본의 변경 허가

내용 : 사건본인(남, 5세)은 2015년 6월 출생하여 베이비 박스에 유기되었던 아이로 2015년 8월경 **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하였다. 당시 보호소 소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본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은 보호소 소장의 성과 본을 따라 ** 김(金)으로 성본창설허가를 받았다. 보호소에 가기 전 사건본인은 40일 동안 한 자원봉사자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자원봉사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건본인을 친가족처럼 돌보았고 보호소에 입소하게 된 사건본인을 잊지 못하였다. 이에 자원봉사자는 사건본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자 2015년 11월 가정위탁보호확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지원으로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사건본인은 위탁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배우자인 위탁가정 아버지의 성의 성을 따라 “이△△”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나 민간어린이집으로 옮긴 후부터는 “김△△”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건본인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성과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자라나게 되어 “아빠, 누나, 형아는 이고 나는 왜 김이야”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건본인의 성은 관례에 따라 보호소 소장의 성을 따른 것일 뿐 실제 혈연이나 가족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에 사건본인이 위탁가정 아버지의 성과 달

라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고, 온전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1심 심판에서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미성년후견인과 그의 가족들이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사건본인 또한 후견인과 후견인의 배우자를 친부모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는 점, 후견인 가족들은 향후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해당 청구에 어떠한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가정법원 2020. 6. 23.)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로 본을 “○○”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법률상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9-313

담당 : 심기종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62세)와 피고 1(남, 72세)은 1985년 4월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별거하다가 1996년 12월 이혼하였다. 원고는 피고 1과의 별거기간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피고 2(남, 27세)를 출산하였다. 출산 당시 원고는 지인부부에게 피고 2의 출생신고를

부탁하였고, 피고 2는 위 부부의 친생자로 등재되었다. 그러다 위 부부는 상속 등의 법률문제를 우려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청구하여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 2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자 친부가 아닌 피고 1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실제와 다른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4. 24.)

1.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생활 내내 지나친 음주와 가정폭력,
상습적인 외도를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9-347

담당 : 강호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1세)와 피고(남, 72세)는 1980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과도한 음주 후 원고와 아들을 폭행하였고, 집안 기물들을 파손하였다. 심지어 외상으로 음주하여서 원고가 술값을 수차례 독촉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술집에서 만난 여자들과 상습적으로 외도하여서 이에 실망한 원고는 여러 차례 가출을 감행하였지만, 어린 아들을 지키고자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미안한 기색 없이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았고, 원고의 경찰신고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피고는 상간녀와 모텔에서 숙박하느라 아들의 결혼식에 불참하였다. 피고는 혼인생활 내내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한 적이 없었고, 이에 원고는 홀로 생계를 마련하느라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과 갑상선 질환 등을 앓고 있다. 두 차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불참석으로 이혼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3. 12.)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4. 30.부터 2020. 8. 31.까지 월 5,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기일을 1회라도 어길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한 다음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 명의의 퇴직금 및 연금일체에 대한 분할 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 명의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상호간에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주민등록마저 말소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9-425

담당 : 전성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5세)와 피고(남, 62세)는 1989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혼인 초부터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었고, 1996년경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어린 아들이 마음에 걸려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혼자 양육하였는데, 어린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1997년 가을경부터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소재지와 연락처를 찾기 어려워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0. 5.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435

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4세)은 조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요리강사로 일하던 중 전배우자를 만나 결혼,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전배우자는 톱밥공장을 운영하였는데 IMF가 발생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신청인의 재산을 공장유지비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들의 잇따른 부도에 톱밥공장도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오갈 곳이 없어진 신청인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러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든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해물철판요리 전문점을 개업하였다. 하지만 생각만큼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적자만 늘어났다. 이에 신청인은 추가대출을 받아 곱창가게로 간판을 바꾸고 장사를 다시 하였지만 이 역시 여러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웠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신청인은 사업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장시간 근로활동이 어려워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다리가 좋지 않아 4번의 수술을 받았고, 자녀명의 임대주택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06. 02.)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무책임한 친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19-475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44세)은 상대방(여, 44세)과 2002년 4월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6세)을 두었으나 2007년 7월 협의 이혼하였다. 혼인기간 동안 청구

인과 상대방은 태국에서 여행업을 운영하며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사건본인은 상대방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10개월 후인 2008년 6월경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부모님 집으로 보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급하게 태국에서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협의 이혼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10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양육의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서울가정법원 2020. 5. 1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로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로 분할하여 2020년 5월 31일을 시작으로 매월 말일 월 200만 원씩을 사건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각 분할지급을 3회 지체(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미지급 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매달 사건본인의 학원비 등 위 양육비에 대한 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기로 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가족이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5.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